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노블클라우드대부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1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 관	등록취소, 과태료 100만원
임 원	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,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,
- (주)노블클라우드대부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변경사항	사유발생일	제출기한	제출일	초과일수
영업소 소재지	2019-12-13	2019-12-30	2020-02-03	35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1항

나. 6개월 이상 무실적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,
- (주)노블클라우드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제3호